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. 10. 8 선고 2024가단20151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중앙회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9. 24.

판결 선고2024. 10. 8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. 6. 10.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23. 9. 15.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소외 C에게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0. 6. 10. 접수 제62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, 같은 등기소 2023. 9. 19. 접수 제106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강지성

별지